

『홍익법학』 우수논문상 시상에 관한 세칙

2018. 04. 07. 제정

2018. 11. 26.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홍익법학』에 수록되는 학술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우수논문상을 시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와 홍익법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횟수) 『홍익법학』 우수논문상은 연간 1회 수여한다.

제3조(선정대상) 『홍익법학』 매호마다 3인 심사위원의 점수합계가 가장 높은 3편의 수록논문을 대상으로 골라 총 1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제4조(선정시기) 『홍익법학』 우수논문은 『홍익법학』 제4호 편집위원회 편집회의 시에 논문게재 확정심사와 동시에 선정한다.

제5조(조직 및 심사방법) ① 우수논문상 심사를 위하여 『홍익법학 우수논문상 시상위원회』를 둔다.

② 홍익법학 우수논문상 시상위원회의 위원은 홍익법학 편집위원 중에서 법학연구소장이 임명하되, 심사절차·위원장 선임 등은 동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홍익법학 우수논문상 시상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논문을 심사한 후 우수논문을 선정한다.

제6조(시상방법) ① 홍익법학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학술논문을 작성한 자에게 홍익법학 우수논문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② 상금의 금액은 홍익법학 우수논문상 시상위원회가 예산을 고려하여 법학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시상취소) 홍익법학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대상논문이 홍익법학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시상을 취소하고, 그 사유서와 함께 수상자에게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8. 11. 26.>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0회 『홍익법학』
우수논문상

수 상 자 : 000 교수(연구원, 변호사)
소 속 : 00 대학교 00 학부(과,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

『홍익법학』 제00권 제0호에 게재된 귀하의 ‘ 000 000 000 ’ 논문이
0000년도 『홍익법학』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의 학문적 업적
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

0000 년 00 월 00일

『홍익법학』 우수논문상 시상위원회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인